

도시가계 생계비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f Variations in Cost-of-Living Index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金 庚 子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Assistant Prof. : Kim, Kyungja

〈목 차〉

I. 서 론	IV. 결 과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various cost-of-living standards utilizing a published national data. 1995 annual data,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re used to set the standards of living. Four index reflecting health and decency level, normal level, 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 and pauper level were suggested and the cost-of-living of each level were estimated. Results showed that cost-of-living estimated in this study were not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former studies, but the name of the standard-of-living need to be changed.

I. 서 론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계비 또는 가계생계비라고 한다. 생계비는 그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생계비는 열량 필요량 등의 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표준 가계의 생활모형을 설정하고 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 다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실태생계비는 일정한 생활조건하에 있는 가계를 실제로 조사하여 얻은 생계비의 최빈값 또는 평균값을 기초로 계산한 실제 소비지출액이다.

* 본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가계생계비에 관한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거나 일정한 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생계비 모델의 유형이 다르지만 그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생계비 연구결과는 '최저'생활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빈곤층을 규정하고 빈곤층에게 필요한 자원의 양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근로자의 임금협상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좌우되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에게 어떤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생계비 연구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시 협상의 준거가 된다. 셋째, 생계비 연구결과는 각종 소득세의 면세점을 선정하고 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과세 또는 면세의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생계비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가계복지수준의 비교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GNP나 기타 여러 명목소득 자료들은 국가별로 다른 가계의 요구수준과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로는 복지수준의 지표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 대비 GNP나 기타 가계소득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명목상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생계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뿐이다. 이 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 1994),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1987), 한국노동연구원(1991), 유종구와 주학중(1986, 1987), 그리고 조성자(1991) 등이 단발적으로 생계비를 연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생계비 연구는 대개 전국규모로 대도시가계와 중소도시가계, 그리고 농촌가계를 포괄하고는 있지만 그 산정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다가 최저생활수준 또는 표준생활수준에 대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계비 연구결과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존 생계비 연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에 대한 기준

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최종 생계비 산정 결과도 서로 크게 다르다. 한국노총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는 모두 '최저생계비'라는 명칭으로 산정되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수치는 후자의 수치보다 거의 2배 가량 높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생계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생계비보다는 이론생계비가 타당성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측정과정이 복잡하고 따라서 편차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태생계비 자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 셋째, 생계비 연구가 단일 생활수준, 특히 최저수준에서의 생계비 산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나 농무성에서 일정규모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의 중앙값을 표준수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 준하여 풍요수준, 하위수준, 최저수준 등에 대한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고(Colien, 1987), 일본에서도 국민생활연구소 등에서 최저생계비와 아울러 표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생계비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고 유락생계비 등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에 대한 생계비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생계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피救恤수준', '최저수준', '표준수준', '遊樂수준' 등 다양한 생계비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설정된 기준에 상응하는 실태생계비의 값을 간편한 방법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실태생계비의 값을 기존 연구의 생계비 자료와 비교하고 생계비의 용어 통일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계비의 개요

생계비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생계비연구는 초기에도 지금처럼 주로 빈곤층을 규정하고 최저임금선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었다(Monroe,

1974). 그 후 Engel, LePlay, Rowntree 등에 의해 차츰 균등화 지수가 정교화되면서 생계비연구의 결과가 각국에서 사회보장이나 공적부조 관련 정책에 기본적인 자료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정기적인 생계비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가령 미국에는 노동통계국과 농무성에서 1965년 Orshansky가 개발한 균등화 지수에 근거하여 생계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USDA, 1993), 일본에서도 국민생활 연구소를 비롯, 각종 개별노조에서 생계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楠田 丘, 1990).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설정된 수준에 따라 생계비의 명칭과 금액이 달라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가계의 생활수준을 취하면 표준생계비(Normal level), 최저한도의 건강과 문화생활(일명 체면과 품위유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최저생계비(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또한 구제 또는 생활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최저의 생활수준을 취하면 피구홀비(pauper level), 단지 최저한의 생물학적 생존만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을 취하면 최저생존비(minimum of subsistence level)이다. 생계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는 유락생계비(health and decency level)라 한다.

위 다섯 가지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다시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 소비자료를 이용해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론생계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 구분 외에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따라서도 생계비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임금협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면세점 설정 등을 위해 생계비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임금협상시 기준이 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보다 이론적으로는 표준생계비의 개념에 가깝다. 임금협상시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은 산업화 이후 소득분배상의 문제로 존재하게 되는 저임

금, 저소득 계층에게 그 사회에서의 적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하게 된 개념이다. 최저임금은 사회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본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또는 면세점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생계비는 임금협상시 사용되는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생계비 연구결과는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또는 면세대상'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얼마만큼을 보호 또는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때 생계비의 기준은 국가의 예산액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되며 그 사회에서의 절대적 빈곤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생계비의 산출방법

실태생계비는 개인이나 가계가 실제로 소비한 금액을 조사하여 파악한 생계비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되고 있는 실태생계비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인 '도시가계연보'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자 생계비 조사'가 있다.

이론생계비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정 생활수준의 기준이 되는 가계 또는 그 기준 가계의 생활수준을 결정한 다음 그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소비품목과 양을 결정하고 필요한 지출액을 결정한다. 최종산출액을 구하기 위한 산정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전물량방식이라고 불리는 Rowntree방식, 반물량방식으로 불리는 Engel방식, 그리고 실태생계비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Allen-Bowley방식이 있다(배무기 외, 1987). 전물량방식은 노동과학과 생활과학의 이론을 기초로 최저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가구별 지출품목과 소요량을 정하고 그 품목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전체 지출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통계학자 Rowntree가 고안한 방식으로 Market-basket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이 방식은 절대적 빈곤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나 측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품목과 가격의 설정에

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으며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물량방식은 가구별 식료품비만을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계산한 후 식료품비에 앙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전체 필요액을 계산한다. 음식물비는 다른 비목에 비하여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앙겔계수만 안정적이라면 산정방식이 전물량방식보다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식료품비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생계비의 산출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특히 식료품비 중 외식비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현재의 소비지출구조에서는 앙겔계수의 의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Allen-Bowley 방식은 소비품목을 사치품과 필수품으로 나누고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0이 되는 소득수준을 구한 다음 그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소비지출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이 때는 사치품과 필수품을 나누는 기준의 타당성과 소득-소비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의 설정이 해결해야 할 난점이 된다.

3. 우리 나라에서의 생계비 연구

우리 나라에서의 생계비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아주 필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과정의 복잡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려우며 자료를 모으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그리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생계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 곳 뿐이다. 한국노총에서는 매년 단신 미혼 남녀에서 5인까지로 설정된 각각의 가계모형에 대해 전국의 시장물가를 직접 조사하여 생계비를 산정하는 전물량 마켓 바스켓 방식을 채택하여 이론적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노동강도가 큰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모형으로 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88년에 처음 최저생계비 연구를 시작한 이후 1994년에야 2차로 전국규모의 생계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계비를 조사하지 않은 해에는 빈곤선 설정을 위해서 기존자료를 소비

자물가지수로 인플레이트하여 사용하였다. 1994년 이후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8년에는 전물량방식과 Allen-Bowley방식을 함께 사용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전물량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전국의 가계를 도시가계와 중소도시가계 그리고 농촌가계로 구분하였으며 1인 가구에서 7인가구에 이르는 7개 유형의 가계에 대한 생계비를 산정하였다.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저생계비의 계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연구, 발표한 자료로는 KDI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반물량방식으로 추계한 생계비 연구(1980)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전물량방식으로 추계한 최저생계비 연구(1987)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1991)은 한 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표준생계비'를 산정해 왔으나 1991년을 끝으로 더 이상 생계비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성자(1991)는 도시근로자의 통상적 생계비라는 이름하에 전물량방식으로 표준생계비를 연구하였고 허선(1988)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최저임금 선정을 위한 기존의 생계비 계측방법을 분석,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조성자는 전물량방식과 아울러 대상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설정한 생계비 수준을 함께 측정하였다. 주관적 생계비의 측정을 위해 그는 '보통' 또는 '풍요'의 수준별로 그 수준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소득액을 직접 적거나 필요한 품목을 모두 적게 하고 각 품목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외에 실태생계비 연구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장현준(1986)의 연구가 있다. 장현준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도시가계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 직접 생계비를 산정한 연구는 아니지만 생계비의 구성요소인 균등화지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자료로는 유종구와 주학중(1986, 1987), 이충섭(1994)의 것이 있고, 생활수준 또는 빈곤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 박명희와 류정순(1995)의 논문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존 연구의 생계비 산정결과들은 실제로 그 값이 상당히 다르다. 가령 한국노총과 보

건사회연구원 두 기관 모두가 그들이 산정한 값을 최저생계비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인가계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1,235,840원과 666,684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빈곤가계를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의 일환으로 생계비를 추정하는 데 비해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자 임금급협의 기준으로 생계비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적용목적이 분명히 다르고 실제 액수도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두 기관의 생계비 산정결과는 도시가계 소비지출액의 평균보다 약간 낮다.

4. 생계비의 조정

일반적으로 생계비의 적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생활수준외에 다음의 세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생계비가 '언제' 필요한가, '어디에서' 필요한가, '몇 명의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표준으로 삼는 생활수준이 동일하고 동일한 생계비 산정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의 값은 가계규모와 지역별, 시대별 물가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비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수준과 가계규모와 물가수준,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물가수준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조정한다. 즉 물가변동에 따라 기존 생계비를 인플레이트 또는 디플레이트한 값을 해당 기간의 생계비 추계에 적용한다. 물론 가계의 생계유지에는 소비자물가조사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품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생계비지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CPI는 생계비지수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규모가 다른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라는 것이 쓰이고 있다. 이는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가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그 유형에는 표준가계(보통 4인가계)를 기준으로 가계간의 필요자원

량을 비교한 가계균등화지수와 표준성인을 기준으로 개별 가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을 비교한 성인균등화지수가 있다. 균등화 지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소 소요영양 필요량, 실제 소비지출자료, 사회적 관습이나 행정관습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소요영양 필요량이 많이 사용된다. 즉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수준의 노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칼로리의 양을 계산하고 그 칼로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음식물의 양을 성인남자 또는 표준가계(보통 4인 가계)를 기준으로 지수화한다.

생활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생계비 연구에서 가장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고 따라서 그 결과도 연구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생존 또는 생존노동에 필요한 최소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이다. 이 방법은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의 근거를 제공하고 비교적 객관적 기준에 충실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저' 생활의 측정에만 유용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으로 이론생계비의 최빈값이나 평균값, 또는 실태 생계비의 최빈값이나 평균값이 '표준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사회에서는 최빈값이 '표준'의 수준을 하향평가할 우려가 있고 평균값은 '표준'의 수준을 상향평가할 우려가 있다.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의 사이에 최임심생계비라 하여 한국노동연구원(1991)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도 있다. 이는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나 기존의 한국노동연구원의 표준생계비가 기준으로 삼은 생활수준이 개념상 최저생계비보다는 높고 표준생계비보다는 낮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이 이름붙여진 것이다. 이 외에도 대상자들에게 직접 '보통의 생활수준'과 '안락한 생활수준'을 주관적으로 규정짓게 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다른 생계비 산정시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저축항목을 포함하기도 한다(조성자, 1991).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의 연구가 이론생계비 추정 방식으로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를 구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실태 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생계

비를 구한다. 가령 미국 노동통계국의 경우 4인가족의 소비지출수준의 중앙값을 표준수준으로 보고 그 기준보다 50% 높은 수준, 그 기준의 2/3 수준과 1/2 수준을 각각 풍요수준, 하위수준, 최저수준으로 삼아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최빈소득수준 가계의 실태생계비를 파악하고 먼저 이를 기준으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 정책의 기준이 되는 표준생계비를 산정한다(楠田 丘, 1990). 또한 이 표준생계비의 일정비율(보통 80%)을 최저생계비로 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엔겔계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에서의 소득수준을 국민생계비의 기준으로 잡기도 한다.

Ⅲ. 연구방법

1. 생활수준의 기준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수준의 생계비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준에서의 실태생계비 액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그리고 피구활생계비로 나누었다.

여기서 표준생계비란 이 사회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이다. 표준생계비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하나는 몇몇 연구들이 표준생계비 추계를 위해 이미 이용해 온 방식과 유사한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한다. 먼저 각 가계원수별로 먼저 9개 소비지출 품목의 중앙값과 비소비지출(송금 및 보조액 제외)의 중앙값을 측정하였다. 다음에 각 9개 소비품목과 비소비지출의 중앙값(Y_i)을 가계원수(X)의 함수로 놓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1차식과 2차식의 계수를 구하여 Y_i 를 다시 추정하였다. 가계원수가 0일 때 생계비도 0이므로 이때 절편은 0이 된다.

$$Y_i = aX^2 + bX, \quad \text{where } i = 1, \dots, 10$$

9개 소비지출 품목과 비소비지출의 Y_i 를 모두 추정 후 이들 값에 기타지출 항목의 보험료를 합쳐

가계원수별 표준생계비를 구하였다. 보험은 투자보다는 가계안정을 위한 수단이므로 다른 소비지출 품목 이상으로 가계복지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험료를 생계비 항목에 첨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로그노말 분포를 이루는 소득과 소비관련 자료에서 흔히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최빈값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우 자료분포에서 최빈값이 여러 개 있거나 0인 경우가 나타나 중앙값이 평균이나 최빈값보다 타당한 대표값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제외되었던 비소비지출과 보험료도 표준가계에서는 꼭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포함시켰다. 단 비소비지출항목 중 송금과 보조를 위한 지출은 제외하였다. 그 다음에는 4인가계의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계원수별 균등화지수를 계산하였다.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한 다른 한 방법은 표본 자료 중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계를 선정하고 그 가계의 품목별 지출의 중앙값을 구하여 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는 이론생계비 산정을 위해 설정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를 소득분포 중 45%에서 55% 사이의 위치에 있는 가계로 임의로 정의하였다. 즉 소득이 표본자료의 상위 45%에서 55% 사이에 있는 가계를 선정하여 이들 가계의 소비지출 9개항목과 비소비지출, 그리고 보험료의 중앙값을 가지고 표준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4인 가계에 대한 표준생계비를 얻은 다음, 가계원수별 생계비의 차이는 위에서 얻어진 가계원수별 균등화지수를 가지고 구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좋은 점은 계산이 간편하고 유락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그리고 피구활생계비가 같은 방식으로 추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 피구활생계비도 위 방식과 마찬가지로 구하였다. 우선 최저생계비는 소득순위 하위 25%에서 35% 사이에 있는 가계의 지출자료를 가지고 구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보전 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대상을 소득순위 하위 30% 내외로 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유락

생계비는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기준소득의 차이만큼을 표준생계비에 더한 값, 즉 소득순위 상위 25%와 35%사이 가계의 지출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피구출생계비는 다시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기준소득의 차이만큼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값, 즉 소득순위 하위 5%에서 15% 사이에 있는 가계의 지출을 가지고 구하였다. 최저생계비와 피구출생계비 산정에는 생계비의 성격상 보험에 관한 지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전국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의 1995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이다. 1995년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가계소득에 대한 자료, 9개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자료, 조세와 이자 등을 포함한 비소비 지출 자료, 저금과 보험료 및 부채상환 등을 포함하

는 기타지출에 관한 자료, 기타 제반 가계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995년 조사의 경우 전국 69개 도시에서 다단계 계통추출방식에 의해 5500개의 표본가계를 선정,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태생계비의 산정 기준을 다양화하는데 있으므로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인 지역별 취업률과 물가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근로자 가계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표집된 모든 조사대상 가계가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소득과 소비지출 자료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본가계의 연간 지출자료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편의상 가장 최근의 자료인 12월의 자료만을 뽑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가계는 1431가계이다.

<표 1> 표본가계의 특성과 소득 및 지출 (n=1431)

변수/항목	평 균	SD	중앙값
가구주의 연령	38.76	10.53	
가계원수	3.64	1.13	
취업원수	1.62	.67	
총수입	3,894,941	4,171,092	3,023,710
총소득	2,596,692	1,793,967	2,290,000
총지출	3,825,607	4,171,092	3,000,485
소비지출	1,856,341	1,301,577	1,565,760
식료품	391,266	215,831	346,600
주거	592,624	588,757	500,000
광열수도	49,708	41,418	40,960
가구집기가사용품	60,141	190,887	14,600
피복 및 신발	97,885	177,944	52,900
보건의료	65,324	139,846	19,000
교육교양오락	184,991	352,413	76,200
교통통신	151,671	598,914	85,400
기타소비지출	262,727	402,378	194,640
비소비지출*	165,601	504,443	78,570
저금	942,859	1,514,544	586,383
보험료	83,797	148,038	18,500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 국졸이하	14.0	- 전문직 또는 고위기술직	11.2
- 중졸이하	23.7	- 사무직과 서비스직	25.6
- 고졸이하	42.2	- 하위기능직	39.4
- 초대졸 이상	20.2	- 단순노무직과 무직	19.5

*: 송금과 보조를 위한 지출 제외

IV. 결 과

정도를 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표본가계의 특성

먼저 표본자료의 가계특성과 평균소득, 그리고 9개 소비지출품목과 비소비지출, 보험료의 평균값과 중앙값,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가계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9세, 가계원수와 취업원수는 각각 3.64명과 1.62명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아 42%였고 가구주의 직업은 대부분이 사무직과 서비스직 또는 하위기능직이었다.

월가계소득의 평균은 260만원, 중앙값은 230만원 정도였으며 이중 185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소비지출에 쓰고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주거비, 식료품비, 기타지출 순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었고 평균 94만원

2. 표준생계비

먼저 가계원수별로 소비항목별 지출액의 중앙값을 구하고 소비품목별 중앙값을 가계원수(X)의 2차함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한 다음 그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가계원수별 중앙값을 다시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6인 이상 가계의 표준생계비는 각각 576,873원, 914,710원, 1,309,189원, 1,593,404원, 1,817,005원, 1,982,602원이다.

4인 가계의 생계비를 100으로 했을 때 1인, 2인, 3인, 5인, 6인 이상 가계의 생계비는 각각 36.2, 57.4, 82.2, 114.0, 124.4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균등화지수를 국내의 대표적인 균등화지수인

<표 2> 표준생계비(1案)의 추정치

지출의 중앙값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6인 이상 가계
식료품	127,805	235,710	336,980	391,820	440,025	468,330
주거	239,949	356,100	472,251	547,136	580,755	573,108
광열수도	14,161	26,564	37,209	46,096	53,225	58,596
가구집기가사용품	6,373	11,242	14,607	16,468	16,825	16,678
피복및신발	14,126	28,580	43,362	58,472	73,910	89,676
보건의료	5,209	10,506	15,891	21,364	26,925	32,574
교육교양오락	17,195	37,648	61,359	88,328	118,555	152,040
교통통신	72,848	52,482	73,902	92,108	107,100	118,878
기타소비지출	61,060	117,526	169,398	216,676	259,360	297,450
비소비지출	18,147	38,352	60,615	84,936	111,315	139,752
보험료	0	0	23,615	30,000	29,000	36,520
표준생계비	576,873	914,710	1,309,189	1,593,404	1,817,005	1,983,602

<표 3> 가계 균등화지수의 비교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6인가계	7인 이상
본 연구의 결과	36.2	57.4	82.2	100.0	114.0	124.5*	
보건사회연구원	36.8	60.7	81.2	100.0	117.4	133.9	149.6
최저임금심의위	29.8	56.5	80.0	100.0	116.9	-	

*: 6인 이상의 가계임

한국보건연구원의 것(1989)과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것(1989)과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표 3>의 가계규모별 균등화지수들은 서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와 한국보건연구원,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지수산출과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그리고 보험료를 모두 더하여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최종생계비를 기준으로 균등화지수를 산출하였다. 반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경우 가계규모별 소비지출액만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계규모별 균등화지수를 구하였다.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는 비목별로 균등화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가계규모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구하고 이 값들과 비소비지출액을 더하여 가계규모별 최종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한편 소득분포 상위 45%에서 55% 사이의 4인 가계를 선택하여 각 지출품목별 중앙값을 파악한 후 그 중앙값에 보험료를 더하여 또 다른 표준생계비(2案)를 구하였다. 4인가계의 표준생계비는 1,558,890원으로 첫 번째 방식으로 얻어진 표준생계비보다 34,524원이 적었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4인 가계 이외의 가계에 대한 생계비는 <표 3>에서 얻어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1인가계, 2인

가계, 3인가계, 5인가계, 6인 이상 가계의 표준생계비는 각각 564,318원, 894,802원, 1,281,407원, 1,777,134원, 1,939,259원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된 4인가계의 표준생계비를 품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액수는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생계비가 다소 컸으나 교육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부분에서는 중간소득자 가계를 선정하여 계산한 두 번째 표준생계비가 크게 나타났다.

3. 유락생계비, 최저생계비, 피구출생계비

표준생계비의 두 번째 추정방식을 유락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그리고 피구출생계비 산정에도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소득분포에서 상위 25%에서 35% 사이에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산정한 유락생계비는 1,762,980원, 하위 25%에서 35% 사이의 가계를 대상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1,273,695원, 하위 5%에서 15% 사이에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산정한 피구출생계비는 898,140원이었다. 표준생계비 1,558,890원을 100으로 할 때 유락생계비는 113.1, 최저생계비는 81.7, 피구출생계비는 57.6에 해당하는 값이다. 4인 이외의 가계원수를 가진 가계에 대한 각각의 생

<표 4> 표준생계비 1案과 2案의 비교 (4인 가계의 경우)

지출의 중앙값	표준생계비(1안)	표준생계비(2안)
식료품	391,820	352,020
주거	547,136	541,500
광열수도	46,096	46,265
가구집기가사용품	16,468	13,725
피복및신발	58,472	40,000
보건의료	21,364	21,840
교육교양오락	88,328	138,900
교통통신	92,108	76,890
기타소비지출	216,676	187,150
비소비지출	84,936	112,100
보험	30,000	28,500
생계비 총액	1,593,404	1,558,890

〈표 5〉 유락생계비, 최저생계비, 피구출생계비 (4인 가계의 경우)

지출의 중앙값	유락생계비(A)	최저생계비	피구출생계비(B)	A/B
식료품	368,900	329,495	268,750	1.37
주거	560,000	490,000	380,000	1.47
광열수도	42,980	33,235	38,515	1.09
가구집기가사용품	14,000	12,300	9,300	1.51
피복및신발	52,000	43,000	21,500	2.42
보건의료	31,000	24,350	20,600	1.50
교육교양오락	183,200	79,775	37,500	4.89
교통통신	107,210	63,155	55,505	1.93
기타소비지출	235,600	155,300	127,910	1.84
비소비지출	132,390	43,085	29,560	4.49
보험	35,700	0	0	0
생계비 총액	1,762,980	1,273,695	898,140	1.96

〈표 6〉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의 비교

생계비 분류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6인이상가계
유락생계비	638,198	1,011,950	1,449,169	1,762,980	2,009,797	2,193,147
표준생계비						
본연구자료(2안)	564,321	894,807	1,281,407	1,558,890	1,777,143	1,939,269
도시가계연보(전국)	--	1,062,400	1,304,500	1,500,200	1,624,200	1,894,700
최저생계비						
본연구자료*	461,077	731,100	1,046,977	1,273,695	1,452,012	1,534,476
한국노총	587,292**	921,209	1,277,881	1,557,107	2,077,619	-
보건사회연구원**	230,275	398,210	608,850	743,795	854,184	972,929
피구출생계비	325,126	515,532	738,271	898,140	1,023,879	1,117,286

* 남자 1인가계(586,377원)와 여자 1인가계(588,206)의 값을 평균한 값임.

** 보사연 자료는 1994년 전국 대도시 생계비 자료를 95년 자료로 inflate한 것임.

*** 6인가계와 7인 이상 가계의 평균값임.

계비는 〈표 2〉에서 얻어진 균등화지수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유락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그리고 피구출생계비의 액수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지출항목은 교육교양 오락 항목과 조세, 이자, 사회보장 분담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항목의 경우 가장 상위의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유락생계비는 가장 하위의 생활을 대표하는 피구출생계비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반면 광열수도비와 식료품 등 전형적인 필수품 항목에서는 그 차이가 가장 작았

다. 최저생계비와 피구출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된 하위 두 집단은 보험가입율이 낮은 듯 보험료의 최빈값과 중앙값이 모두 0이었다.

4. 생계비의 비교

〈표 6〉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4개 생활수준(유락, 표준, 최저, 피구출)에 대한 생계비와 한국노총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그리고 도시가계연보의 표준생계비(월평균 소비지출액)를 정리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3인가계와 4인가계의 경우 본 연구와 도시가계연보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가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인가계 또는 5인가계 이상에서는 차이가 커지는데 이로 미루어 생계비간의 불일치는 기준이 된 생활수준의 차이보다 균등화지수의 추정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명칭을 통일할 경우 균등화지수의 계산방법만 정교화하면 본 연구에서처럼 간편하게 추계된 자료가 이론생계비 자료를 대신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균등화 지수를 계산할 때 보건사회연구원은 7인 이상의 가계를 함께 묶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6인 이상의 가계를, 한국노총에서는 5인 이상의 가계를 함께 묶어 계산하고 있다. 즉 4인가계를 100으로 할 때 5인가계의 균등화지수가 본 연구에서는 114로 나타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값이 116.9,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는 117.4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자료에서는 5인 이상의 가계에서 그 값이 133.4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생계비에서는 서울지역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중앙값을 이용하여 추계한 생계비가 전국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계한 생계비보다 5인가계와 6인 이상 가계에서는 각각 9%, 2%가 높고 2인가계에서는 오히려 19%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편포가 심한 소득, 소비지출 자료에서 도시가계연보 자료의 생계비 추정에 사용된 평균값과 본 연구의 생계비 연구에 사용된 중앙값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생계비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생계비의 개념에 더 가까운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계와 2인가계에서는 본 연구의 최저생계비보다 2%에서 3% 정도 크다. 그러나 5인가계 이상에서는 17%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는 본 연구에서의 피구출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는 본 연구의 표준생계비보다는 52%에서 59%까지 낮고, 피구출비보다는 12%에서 29% 정도까지 낮다. 미국의 경우 표준생계비의 1/2이나 1/3을 상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표준생계비보다 52%에서 59% 정도 낮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인 상대빈곤선의 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득분포 하위 5%에서 15% 사이의 가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구출비보다도 낮은 것을 보면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수준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결 론

우리 나라에서의 생계비 연구는 정책적 필요상 간헐적으로나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의 측정, 가계원수와 물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생계비의 조정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측정의 기준이 될 생활수준은 그리 다양하지 않고 아직도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최임심 생계비 등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상 아직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생계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들 연구가 주로 최저생계비의 추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생계비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분야는 생계비가 지칭하는 생활수준을 먼저 명확하게 통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빈곤정책이나 임금협상 외에도 세금체계 정비, 복지수준 측정 및 비교 등 여러 분야에서 생계비 연구 결과를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최저생계비 외에 상대적 빈곤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생계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생계비 추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간편한 생계비 추정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수준에서의 실태생계비 산정기준을 하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생활수준을 유락수준, 표준수준, 최저수준, 피구출수준의 4가지로 나누고 9개 소비지출 품목 외에 비소비지출과 보험료까지 합쳐서 생계비를 계산하였다. 추정 결과 생계비 추정방법이 기존의 최

저생계비 산정과정에 주로 이용되어 온 이론생계비보다 훨씬 간편하면서도 3,4인 가계의 경우 산정결과가 기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생계비를 계산하기 위해 '어떤 가계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떤 품목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계비추계를 위한 대상가계를 소득분포상 상위 25-35%, 45-55%, 하위 25-35%, 5-15%에 위치한 가계로 보고 각각 上, 中, 中下, 下의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생계비 기준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어 생계비의 기준을 상당히 임의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앞으로 목적에 따라 기준과 대상가계의 선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혐료나 비소비지출, 외식비 등의 항목을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 추계를 위해 12월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나 계절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치를 사용한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각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계층의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각각의 수준을 나타낼 생계비의 명칭에 대한 문제가 통일되고 또 균등화지수의 추정방법만 정교화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기준용도와 새로운 용도에 손쉽게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楠田 丘(1990). 생계비와 임금. 일본산업노동 조 사소 編. 한국공업표준협회 譯.
- 2) 박명희, 류정순(1995). 빈곤가계의 복지지원을 위한 빈곤선 설정의 이론적 고찰. *대한국정학회지*, 33권 5호.
- 3) 배무기, 박덕재, 조우현(1987). 최저임금 적용대상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산출모형 개발연구. 서울 대학교 경제연구소.
- 4) 서상목(1979).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 개발연구, 여름호. 한국개발연구원(KDI)
- 5) 유종구, 주학중(1986).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 *한국개발연구*, 겨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 6) 유종구, 주학중(1987). 1984년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 추정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여름호. 한국개발연구원(KDI).
- 7) 이충섭(1994). 가구 균등화지수 추정모형에 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 8) 장현준(1986). 한국 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 개발연구원.
- 9) 조성자(1991). 도시근로자의 통상적 생계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4). 근로자 생계비 조사 결과 보고서.
- 11) 한국노동연구원(1991). 1991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4, 1995).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 생계비 동향. *보건사회통계연보*.
-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94 연구보고서요약집.
- 15) 허선(1988).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과 최저임금의 재설정을 위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통계청(1995). 1995 도시가계연보.
- 17) Colien, H. (1987). Family budget guideline. *Family Economic Review*, No. 4.
- 18) Monroe, D. (1974). Pre-Engel studies and the work of Engel: The origins of consumption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3(1).
- 19) Orshansky, M.(1965). Counting the poor: Another look at the poverty profile. *Social Security Bulletin*. Vol.28(Feb.).
- 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93). Cost of food at home. *Family Economic Review*. Vol. 1-4.